



제주보육원 정규직 생활지도원 공개채용

모집기간 24. 5. 24.(금) ~ 6. 2.(일)

▣ 모집부문

정규직 생활지도원

- 채용인원 : 1명
- 주요업무
 - 아동 생활지도(학습, 학교생활, 프로그램 진행/인솔 등)
 - 보육일지 및 프로그램 계획서 / 보고서 작성
 - 시설물 관리
 -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업무
- 급여 :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적용(4대보험 포함)
- 근무시작일 : 2024. 6. 中

▣ 응시자격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
- 아동복지법 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에 해당하지 않는자
- 아동복지법 제54조의2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자
- 사회복지사, 보육교사, 유치원/초등학교/중등학교 교사 중 1개의 자격증 소지자
- 상주 근무 가능자(*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근무형태 변경될 수 있음)
- 운전가능자
- 만60세 미만인자(*시설 정년 만60세)

▣ 전형일정

24. 5. 24. ~ 6. 2.

24. 5. 24. ~ 6. 4.

24. 6. 5.

채 용

응시원서접수
(18시까지)

1. 면접전형
2. 인성검사

합격
(홈페이지 공지)

1. 건강검진
2. 범죄경력조회 등

수습기간
(3개월)

1. 입사결정
2. 채용계약

- ◆ 상기 일정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◆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하여 일정 조정 후 수시 면접 실시
- ◆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검사를 실시함
- ◆ 일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통보함
- ◆ 인성검사, 건강진단서, 범죄경력 조회 후 이상 없을시 임용(채용계약) 진행됨
- ◆ 서류전형점수와 면접시험 점수 합산결과 고득점자 순 결정 (동점자 발생시 '면접시험' 고득점자 합격)

⇒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

1. 제출서류

- 자사양식 이력서·자기소개서·개인정보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 (붙임1 서식) 1부

2. 지원방법

- 이메일 접수 (jeju887@hanmail.net)

- ◆ 응시원서 양식(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- ◆ 메일 열람 후 '서류 접수 완료' 메일 발송
- ◆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하여 일정 조정 후 접수기간 내에 수시 면접 실시
- ◆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검사를 실시
- ◆ 서류전형점수와 면접시험 점수 합산결과 고득점자 순 결정 (동점자 발생시 '면접시험' 고득점자 합격)
- ◆ 인성검사·건강진단서·범죄경력 조회 후 이상 없을시 임용(채용계약) 진행됨
- ◆ 자격증, 경력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은 최종 합격 후 제출
- ◆ 일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통보함

☞ 기 타

1. 응시원서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
2.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,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
3. 합격자 통지 후 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채용이 취소되며, 이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.(채용취소 및 급여 반납 등)
4. 채용예정자의 경우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, 건강진단서 등의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
5.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·합격취소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이 되지 못하거나, 최종합격자가 임용

-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또는 재공고를 실시 할 수 있음
6.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으며 재공고를 통해 모집함
 7.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)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반환합니다. 다만,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
 8.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파기(삭제)함(채용 확정 후 15일 이내)
 9.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제주보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함
 10. 기타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(☎ 064-743-5020)

11. 관련 법령 정보

****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(종사자) ****

-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 <개정 2017. 10. 24., 2021. 12. 21.>
 1.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-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 <신설 2021. 12. 21.>

****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(임원의 결격사유) ****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 1. 미성년자
 - 1의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- 1의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- 1의4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- 1의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1의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- 1의7.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「아동복지법」 제71조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, 「지방재정법」 제97조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54조제2항제1호, 「장애인복지지원법」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「형법」 제28장·제40장(제360조는 제외한다)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나.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다.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1의8.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1의9.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다.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**** 아동복지법 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 ****

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이하 “취업제한기간”이라 한다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(이하 “아동관련기관”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“취업제한명령”이라 한다)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6. 1. 19., 2016. 3. 22., 2016. 5. 29., 2017. 9. 19., 2017. 10. 24., 2018. 12. 11., 2019. 1. 15., 2020. 4. 7., 2020. 12. 29., 2021. 12. 21.〉

- 직무내용 및 채용절차 관련 문의 : 제주보육원 인사담당자 (☎ 064-743-5020)